

2008. 9. 5(금) 10:00

1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08. 21.
- 제출자 : 거창군수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09. 04(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의안번호 : 제2008 - 35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2005. 8. 4.)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명칭을 변경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법률 변경(안 제9조, 제1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을 변경(안 제10조제4항)
 - 위원 구성인원 변경: 15명 → 12명
 - 실과장 중 임명
 - ⇒ 실과단사업소장 2/3임명, 민간전문가 위촉 1/3
 - 위촉직 임기조항 신설
- 위원회의 심의사항 내용 추가(안 제11조)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변경(안 제12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 → 퍼센트,
 - 이내 → 내,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0인 → 0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2005. 1. 15 제정된 조례로, 그간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관리 운용되어오다 2005. 8.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률 변경
과(안 제9조, 안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
어 위원 구성인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민간전문가 위원 정수를 1/3 이상으로 명시하였으며(안
제10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 규정사
항임), 안 제11조 중 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추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규정사항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 8. 4. 제정되었
음에도 조례 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그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